



공교 개발부담금 관련 검토 의견

2026. 2.

강성진 심사

I. 개발부담금

1. 부과대상

- ▣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와 별표1 제7호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
- ▣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따르면 종교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, 제2종근린생활시설(종교집회장,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)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

2. 우리 교회 현황

- ▣ 우리교회 오등동 464 토지는 임야 및 과수원에서 2021. 7. 종교용지로 지목변경 (지적면적 : 1847 제곱미터)
- ▣ 그 지상위에 제주시 대원길 128-19 일반철골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(교회)로 연면적 499.44 제곱미터로 건축허가 조건 협의

II. 결론

- ▣ 위의 2조건 모두에 해당되어 개발부담금 대상입니다